패션산업 진흥법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90 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:김재원·황운하·정춘생

백선희 · 신장식 · 김선민

차규근 • 이학영 • 정준호

문정복 · 한창민 · 송옥주

이해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20년 40.3조원에서 2022년 45.7조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,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, 뷰티, 음악에 이어 패션은 네 번째로 주목받는 한류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정부의 패션 관련 정책은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에 치중되어 있어,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임.

이에, 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, 세계 시장에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패션산업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, 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,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 다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4조).
- 다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패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(안제5조).
- 라. 정부는 패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, 연구 및 개발의 촉진, 창업 지원,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.
- 마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,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·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- 바. 정부는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 홍보와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 여 패션쇼, 박람회 개최·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- 사. 정부는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음(안 제12조).

패션산업 진흥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패션산업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, 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여,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패션"이란 특정한 시기에 사회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의류, 신발, 장신구 등 복식의 창조적 결과물을 말한다.
- 2. "패션산업"이란 패션 상품 및 콘텐츠의 기획, 개발, 제조, 유통, 소비 등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 - 가. 의류 산업
 - 나. 신발 산업
 - 다. 장신구 산업
 - 라. 직물ㆍ가죽제품 제조업
 - 마. 디지털 패션 콘텐츠 산업
 - 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
- 3. "패션사업자"란 패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및

단체를 말한다.
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패션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패션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 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패션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
 - 3. 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
 - 4.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
 - 5. 패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
 - 6. 패션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연구소, 대학, 민간기업 및 단체 등 관련 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
한다.

- 제5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패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연구소, 대학, 민간기업 및 단체 등 관련 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·범위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정부는 패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·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연구 및 개발의 촉진) ① 정부는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·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패션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
 - 2. 패션산업의 진흥,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 · 연구
 - 3. 패션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
 - 4. 그 밖에 패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·재료 및 처리기법 등 패션 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 및 지원의 대상・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창업 지원) ① 정부는 패션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9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 정부는 패션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 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해외교육활동 지원
 - 2. 패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
 - 3. 패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, 교육, 컨설팅 및 사업화지원
 - 4. 패션산업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
 - 5. 패션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 · 운영
 - 6.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10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
 - 2. 패션디자인 등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· 홍보
 - 3.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전시 및 홍보 등) 정부는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 홍보와 패션

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패션쇼, 박람회 개최·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2조(금융 지원) 정부는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3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 게 할 수 있다.
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제1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·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